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토지등의 협의매수 주체 추가 》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75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제221687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토지등의 협의매수 주체 추가(안 제32조제4항)	2

I.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제221687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2. 13.

다. 회 부 일 : 2026. 2.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고, 특별관리지역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토지, 물건, 권리)을 매수할 수 있음.

해당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의 축사 매입사업은 기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직접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며 매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토지등의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군수를 포함함으로써 축사 매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3. 검토의견

가. 토지등의 협의매수 주체 추가(안 제3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관리) ① ~ ③ (생략) ④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u>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는</u> ----- ----- ----- -----. ----- ----- ----- ----- ----- -----.
※ 시행일: 공포 후 <u>6개월</u>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2조제4항), 개정안은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군수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¹⁾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고(제32조제1항²⁾),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³⁾을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2조제4항).

현행법 제32조제4항의 협의매수 규정은 과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왕궁 정착농원에 대한 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협의매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음⁴⁾⁵⁾.

1) 특별관리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질오염원의 발생 장소를 지정·관리하는 지역으로 2026년 4월 기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음.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08853호) 검토보고서

5) 해당 규정은 2014년 5월 21일에 유효기간 3년으로 도입(법률 제12644호)되었으나, 이후 정부와 토지소유자와의 이견 등으로 인해 보상합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이 3차례 연장되어,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 매수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되었음.

한편, 2021년 새롭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경우, 생태복원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환경부⁶⁾ 직접사업으로 국비 481억원을 투입하여 현업축사 53개소에 대한 매입·철거 및 식재를 추진하였으나, 매입비 상승과 잔여지 매입 등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인 26개 축사에 대한 매입만 완료되었음.

【 축사매입 사업 현황 】

구분	계	국가직접사업 (1단계)	국고보조사업 (2단계)
사업기간	'22~'29년(8년)	'22~'25년(4년)	'26~'29년(4년)
사업량	53개(241,203m ²)	26개(126,329m ²)	27개(114,874m ²)
총사업비	821억원 (국비 719, 지방비 102)	481억원 (전액 국비)	340억원 (국비 238, 지방비 102)
공정별사업비	매입 587억원 철거·식재 234억원	매입 343억원 철거·식재 138억원	매입 244억원 철거 96억원
시행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제시
사업내용	-	축사매입+철거 +수목식재	축사매입+철거

※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잔여축사 27개소를 매입·철거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추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 사업은 기존 환경부 직접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7대 3의 비율로 분담하는 총사업비 34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음.

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음.

현재 잔여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 238억원이 확보되었으며, 2026년 1월 21일 김제시·전주시·완주군은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잔여축사 매입과 관련한 지방비를 전라북도 30%, 김제시 50%, 전주시 10%, 완주군 10%의 비율로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음.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⁷⁾에 따르면 용지 정착농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2026년 4월 기준으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김제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특별관리지역 지정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축사 매입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용지 정착농원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되더라도 시장·군수가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개정안의 논의 경과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시장·군수의 특별관리지역 내 토지등의 협의매수 권한 부여 문제는 특별관리지역 재지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7)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행 2021. 11. 3.]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1-218호, 2021. 11. 3., 제정]

이러한 경과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내 잔여축사 매입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 수행 주체인 시장·군수가 토지등을 원활히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협의매수를 통해 김제시의 잔여축사 매입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잔여축사 매입사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분담하는 구조인 점을 고려할 때, 협의매수의 주체가 되는 시장·군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같이 표현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수행 주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된 점을 고려할 때, 축사 매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한편, 전라북도는 개정안에 동의하면서도 조속한 사업 추진과 이미 편성된 지방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아니라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임.

문 의 처
02)6788-5579

참고

축사 매입사업 개요

□ 위치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 2029년(4년)
- (총사업비) 340억원(국비^{70%} 238, 도비^{9%} 30.6, 김제시^{5%} 51, 전주시^{8%} 10.2, 완주군^{6%} 10.2)
 - (축사매입) 244억원('26~'28년), (철거) 96억원('27~'29년)
- (사업량) 27개 축사(114,874m²)
- (시행기관) 김제시
- (내용)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잔여 축사 27개소(돈사 및 우사) 매입·철거

□ 주요 추진상황

- 특별관리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전북환경청) : '20.5.~'21.6.
- 새만금 3단계('21~'30년) 수질개선대책 반영 및 사업확정(기후부) : ~'21.12.
-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기후부, ~'24.12.31.) : '21.11.3.
-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제32조제4항 부칙 유효기간 '28.12.31.로 연장) : '24.11.9.
- (1차 사업 추진) 총 53개 현업축사 중 26개 매입 완료(기후부 추진) : '22.1.~'25.12.
- (2차 사업 예산확보) 잔여축사 매입사업 국비 238억 확보 : '25.3.~'25.12.

※ 국가직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국비 보조비율 70%